

## 조선후기 제주도 지역 여성의 재산 소유와 상속 - 구좌읍 김해 김씨 가계의 별급문기를 중심으로 -

이 육 부\*

### 目 次

- |                      |                           |
|----------------------|---------------------------|
| I. 머리말               | III. 상속을 통해 본 여성들의 결속과 협력 |
| II. 초알일 별급의 소유권과 처분권 | IV. 맷음말: 재산상속의 두 원리와 상속문화 |

### 요약

이 연구는 조선후기 제주도 지역에서 작성된 상속 문서에 주목하여 혼인한 여성의 재산 소유 실태와 상속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고, 나아가 여성의 상속권 행사가 여성 출계 집단의 영향력이 크게 작동하는 제주도 친족문화와 어떤 상관성을 가지는지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구좌 김해 김씨 가문의 방대한 전승 고문서 중 각별히 초알일 별급문기를 면밀하게 분석하였다. 그동안 제주도 지역은 밭농사와 잡곡 재배가 주를 이루는 농업 환경으로 인해 여성 노동력에 대한 사회적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여성의 경제적 위상도 높을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렇지만 여성의 경제적 행위나 위상과 관련하여 그 구체적 실체가 밝혀진 사례는 거의 없으며, 당연한 결과지만 여성의 경제적 위상과 제주도 친족문화의 상관성에 주목한 연구도 없었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먼저 여성들의 경제 행위를 보여주는 5점 내외의 별급문기를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같은 시기에 작성된 다른 가문의 별급문기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을 통해 여성들의 재산 소유 실태와 그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나아가 여성들의 상속권 행사 과정을 면밀하게 추적하였다.

논의의 중심은 여성이 혼인한 후 남편의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아 소유하고, 이 재산을 다시

\*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특별연구원

아랫세대의 시집온 여성에게 상속하는 3대 60년에 걸친 여성들의 세대 간 상속의 특징과 의미이다. 남편의 가족 구성원들이 시집온 며느리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초알일 별급은 19세기까지 광범하게 확산되었던 제주도 별급 관행의 하나이다. 본고에서 사례로 분석한 김덕경 가계의 며느리들은 초알일 별급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이 재산권을 직접적 혈연관계가 없는 며느리에게 상속하는 방식으로 행사하였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상속에 혼인 연망을 적극 활용하며 세대가 다른 여성들 사이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무속신앙의 전통이 강한 제주도에서 경제적 유대는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뒷받침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상속을 통해 여성들의 유대를 강화하려한 노력은 부계적 가계 계승의 원칙이 강화되면서 수반되는 여성 집단의 위상 약화를 막으려는 여성들의 전략적 대응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 이 연구는 이 점을 강조하면서, 부계 혈연집단의 응집력만 고집하지 않는 제주도 친족문화의 특징을 여성들의 역할과 대응 속에서 찾으려 하였다. 재산 상속에서 여성의 전략적 선택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여성들의 유대에 주목한 이 연구가 혼인과 상속, 그리고 친족문화의 상관성을 규명하는데 있어 새로운 상상력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제주도, 여성, 상속, 혼인, 친족, 별급, 초알일 별급, 분재기

## I. 머리말

제주도는 ‘웬당’으로 대표되는 특징적인 친족문화를 가진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친인척을 의미하는 지역 방언인 웬당[眷黨]은 혈연과 혼인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친족개념으로,<sup>1)</sup> 혈연으로 연결된 부계 친족뿐만 아니라 혼인으로 이어진 모든 친인척들까지 포함하는 것이 특징이다.<sup>2)</sup> 웬당 개념은 제주도에서 당내나 문중 개념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 그리하여 웬당 관계가 확인되는 사람 사이에는 노동교환을 비롯하여 정치적 후원 집단의 역할까지 다양한 인적, 물적 교류가 일어나는데, 이러한 전폭적인 교류로 인해 웬당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사람들은 웬당 문화를 배타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도 있다.

이렇듯 제주도 친족문화의 핵심을 이루는 웬당 문화는 혈연과 혼인, 그리고 지연으로 얹힌 사람들까지 친인척으로 묶이며, 중심과 주변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한 요소에 기반한 집단이 강한 응집력을 가지기는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낸다. 이것은 부계 혈연을 중심으로 유대와 결속을 강조하는 일반적인 한국의 친족 문화와는 다른 특징이다.<sup>3)</sup> 특히 겹사돈이나 부찌사돈같은 다양한 혼인 관행은 부계 혈연만 고집하지 않는 제주도 친족문화의 성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sup>4)</sup> 게다가 제주도에서 혼인은 친인척의 범주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동원 가능한 정치·경제적 자원의 확대를 가져왔다. 또한 열악한 경제 환경과 반복되는 경제 위기에 대응해 효과적으로 위험을 분산(risk sharing)하는데도 기여했다.<sup>5)</sup> 이런 까닭에 부계적 특성과 비부계적 특성이 공존하는 제주도 친족문화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혼인의 역할에 주목하여 혼인 관계의 작동 방식과 혼인과 친족문화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제주도 지역의 혼인 연구는 戶籍中草를 포함하여 統籍, 民籍, 수령의 업무일지 등의 자료를 분석하여 다양한 계층과 집단의 혼인 관행을 밝히는데 주력하였다. 그리하여 혼인 연령이나 혼인 시기,<sup>6)</sup> 그리고 항리층의 혼인 경향<sup>7)</sup> 등 혼인과 관련한 많은 구체적인 사실들이 밝혀졌다. 특히 혼인관계망과 웬당 구조의

1) 웬당은 권당[眷黨]의 제주도 지역 방언으로, 친척을 의미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개정증보 제주여사전』, 2009; 박용후, 『제주방언연구』 자료편, 고대민족문화연구소 출판부, 1988.

2) 김창민, 「제주도 마을의 호적중초에 나타난 웬당관계의 변화」, 『한국문화인류학』 44-3, 2011, 121~123쪽; 김창민, 「호적중초를 통해서 본 19~20세기 제주도 마을의 웬당관계」, 『비교문화연구』 16-1, 2010, 195~196쪽. 이 밖에 웬당과 관련한 연구로는 웬당을 제주도 친족문화의 핵심 요소로 처음 주목한 최재석이나 전경목, 그리고 웬당의 성격과 중요성을 사례를 통해 규명한 김혜숙의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3) Deuchler, Martina/ 이훈상 역, 『한국의 유교화 과정』, 너머북스, 2013, 23~30쪽

4) 이창기와 김혜숙은 부찌사돈을 “한 번 이상의 혼인에 의해서 사돈관계가 중복되었을 때를 일컫는다.”라고 하여 겹사돈과 부찌사돈을 대체로 같은 것으로 보며 당내 집단 간의 혼인관계 중복까지 포함시켰다. 김혜숙, 『제주도 가족과 궤당』, 제주대 출판부, 1999, 456~457쪽; 이창기, 『제주도의 인구와 가족』, 영남대 출판부, 1999, 270~271쪽.

반면 김창민은 겹사돈과 부찌사돈을 분석적 차원에서 구분하여, 겹사돈은 두 친족 집단 간 결속력을 강화하는 수단이지만 부찌사돈은 사회적 연망을 확장하는 수단의 성격이 있다고 보고, 전자는 직접 형성하는 관계지만 후자는 간접적으로 형성되는 관계로 보았다. 김창민, 앞의 논문(2011), 132~133쪽, 137~141쪽.

5) 이제혁, 「선물의 hau: 종답경제의 정치경제학과 관계자본」, 『한국사회학』 45-1, 2011, 41~42쪽.

6) 김진태, 「18~19세기 제주도 여성의 결혼과 출산」, 『대동문화연구』 65, 2009.

7) 이성임, 「19세기 제주 대정현 읍치 거주민의 혼인양상-『大靜縣衙中日記』와 ‘동성리호적중초’를 중심으로」, 『대동문화

상관성을 규명하고,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웬당의 역할을 밝힌 김창민의 일련의 연구는 본고의 논의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하다.<sup>8)</sup> 김창민은 제주도 친족문화의 핵심으로 간주되는 웬당에 주목하여 혼인과 웬당의 밀접한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확산시키는 핵심 기제로서 혼인의 역할을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의미 있는 성과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혼인과 친족문화의 상관성을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연구는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혼인과 친족문화의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해 본고는 우선 며느리를 상속인으로 하는 초알일 별급에 주목하여 여성들의 재산소유와 상속, 이를 통해 형성되는 여성들의 유대에 초점을 맞추면서 상속과 혼인의 관계를 검토하고, 이것이 제주도 친족문화의 특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하였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다양한 별급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육지와 달리 제주도에서 별급의 사례는 대체로 혼인별급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sup>9)</sup> 이러한 차이는 財主가 행사할 수 있는 재량권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제주도의 別給 사례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혼인별급은 한 사람의 제주가 자신의 아들과 딸 뿐 아니라 그들 각자의 배우자인 사위와 며느리에게도 재산을 상속하도록 요구한다.<sup>10)</sup> 그렇기 때문에 별급 상속의 형식을 따르지만 실상은 일반적인 허여 상속과 크게 다르지 않고 재주의 재량권도 제한적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부분은 직접 혈연관계가 없는 사위와 며느리도 별급의 상속인이 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19세기에 접어들면 아들 우대의 상속 관행이 정착되면서 딸이나 사위의 상속 뜻은 점차 줄거나 없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런데 유독 며느리는 ‘初謁日’ 別給이라 하여 지속적으로 혼인별급을 상속받고 있다. 이것은 여러 가문에서 전승하는 分財記 중 초알일 별급문기의 비중이 50%를 상회하는 데서도 확인된다.

며느리를 상속인으로 하는 초알일 별급 관행의 지속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분명한 것은 18세기를 전후하여 부계혈연을 강조하고, 장자를 가장 중요한 계승자로 여겨온 한국의 친족문화 틀로는 며느리를 상속인으로 하는 이러한 상속 관행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sup>11)</sup> 그렇다고 섬이라는 제주도의 입지조건에 근거해 유교문화가 수용되지 않은 때문이라고 간단히 결론내리면, 지역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다양하게 형성될 수 있는 친족문화의 유형에 대한 풍부한 논의를 차단할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본고는 제주도의 친족문화가 육지의 그것과 다르다는 단순한 비교를 넘어 제주도에서 어떻게 외가나 처가의 친족 구성원들이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가에 주목하여 별급 상속에서 그 실마리를 찾고, 나아가 여성과 상속, 친족문화, 그리고 유교적 사회질서의 확산이라는 네 요소 사이의 상관관계를 고려하면서 논의를 전개하려 한다.

연구』 57, 2007; 권오정, 「19세기 제주도 촌락의 촌락내혼율과 촌락내 혼인 관계」, 『제주도연구』 23, 2003. 이 밖에 높은 촌락내혼 비율에 주목한 다수의 연구들이 있다.

8) 각주 2번 웬당과 관련한 김창민의 일련의 연구 참조.

9) 문숙자, 「조선후기 제주 지역의 재산상속과 봉사 관행-분재기 분석을 중심으로」, 『사학연구』 81, 2006, 211쪽.

10) 고창석, 「조선후기 제주지방 별급문기의 연구」, 『제주도사연구』 7, 1998; 고창석, 『제주도고문서연구』,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2001; 이옥부, 「조선후기 제주도 지역의 별급관행과 그 특성-구좌읍 김해 김씨 가문의 별급문기를 중심으로」, 『역사학보』 238, 2018.

11) 조선시대에 며느리는 다양한 이유로 별급을 받지만, 혼인 자체를 이유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옥부, 앞의 논문(2018), 270쪽, 각주 9 참조.

이러한 전제 위에서 본 연구는 먼저 3대 60년에 걸쳐 초알일 별급문기를 전승하고 있는 김해김씨 가문을 대상으로 초알일 별급문기를 통해 여성의 재산 소유와 상속 현황을 자세히 밝히고, 이것을 여성들이 세대 간 상속을 통해 경제적 유대를 만들어간 일련의 대응 전략과 연관지어 논의하려고 한다. 또한 19세기까지 이러한 유대가 지속된 이유와 관련하여 여성들이 놓여있었던 경제적, 사회적 상황과 이에 대응한 전략적 선택의 기반에도 주목하였다. 마지막으로 여성들이 입지를 유지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경제적 유대를 형성하면서 ‘衆散’과 같은 문화적 유대도 적극적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목하였다.

가문의 사회적 지위가 올라갈수록 부계혈연을 강조하는 유교 문화를 수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것은 제주도라고 다르지 않았다. 그리하여 제사와 재산 상속에서 여성들은 약자의 입장에 처했고, 특히 혼인한 여성은 본가를 떠나 남성 집단의 일원으로 포섭되며 딸보다 더 열악한 입장에 처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제주도 친족문화는 여성의 친족집단 구성원들이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필자는 이것을 여성들의 전략적 대응의 결과로 보려고 한다. 조선후기 제주도의 여성들은 여성 노동력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필요를 토대로 남성들과의 관계에서 평등한 관계를 이끌어 낼 수 있었을 것이다. 아울러 여성들은 자신의 재산권을 이용해 전략적으로 세대 간 상속을 행함으로써 여성들 사이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해 나갔을 것이다. 혼인 연망은 이 과정에서 여성들에 의해 적극 이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무속신앙을 통해 형성된 여성들의 유대도 경제적 유대와 상호 보완관계를 이루며, 집단으로서 여성이 영향력을 유지하는데 있어 기반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논의는 구조에 함몰되어 수동적인 존재로 치부되며 간파되어 온 여성들의 주도적인 역할과 전략적인 대응을 부각하고, 나아가 제주도 친족문화와 여성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요구되는 제주도의 재산상속의 실태와 관행, 그리고 친족관계에 대한 지식은 그동안 축적된 성과들을 토대로 하지만, 각별히 제주도 지역에서 19세기까지 초알일 별급이 광범하게 확산된 사실을 밝힌 최근 연구의 연장선에 있음을 밝혀 둔다. 초알일 별급 관행의 정착과 여성들의 세대 간 상속 사이의 상관성, 그 과정에서 혼인 연망이 여성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이용되는 과정까지 본 연구는 여성의 전략적 대응과 그 결과 형성된 여성들의 유대에 주목할 것이다.

## II. 초알일 별급의 소유권과 처분권

17세기 중반 大靜縣의 沙溪里에서 舊左邑 坪代里의 방축동으로 이주해 150여년 세거했던 金海 金氏 金德鏡 가계는 상속과 매매 관련 경제 문서 81점을 포함하여 모두 226점의 고문서를 보존, 전승하고 있다.<sup>12)</sup>

12) 김해 김씨 김덕경 후손가의 전승고문서 및 가계 구성과 관련한 치밀한 연구는 저자의 『조선후기 제주목 한동리의 김해 김씨 가계과 이들의 고문서』(공저,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5)와 「조선후기 제주도 한동리 김해 김씨 김덕경 가계와

이 중에는 여성의 재산 소유 및 상속과 관련하여 6점의 초알일 별급문기도 다른 분재기와 함께 전승되고 있다.

이미 다른 연구를 통해 밝혔듯이 초알일 별급문기는 남편의 친족 구성원들이 며느리가 된 여성에게 혼인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약간의 재산을 별급하며 작성하는 문서로,<sup>13)</sup> 현재까지는 제주도에서만 발견되는 상속문서로 알려져 있다. 김덕경 가계는 이러한 초알일 별급문기들이 1780년부터 1845년까지 대략 3대 60여 년 사이에 작성된 것들을 전승하고 있다. 그리하여 초알일 별급의 구체적인 상속 내용이나 변화를 추적하는데 도움이 되며, 더욱이 다른 가문들과 비교할 때 각 세대의 여성들에 대한 정보를 풍부하게 담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특히 초알일 별급을 매개로 서로 다른 세대의 여성들 사이에 세대 간 상속이 이루어진 사실은 상속관행의 다양한 층위를 비롯하여 여성의 경제적 위상이나 친족문화에서 여성의 친족 구성원들의 참여나 영향력이 큰 현상과 관련해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 1. 김씨 부인의 생애와 재산 소유 그리고 상속

김덕경 가계의 전승 문서 중에서 초알일 별급과 관련이 있는 문서는 6건이며,<sup>14)</sup> 이 중 문서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인물은 김덕경의 장남 金道玉과 혼인한 金寧 金氏이다. 김씨와 관련해서는 초알일 별급문기 외에도 다수의 戶籍자료와 家牒, 그리고 김씨가 財主로 직접 재산권을 행사한 몇 건의 상속문서들이 더 전승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김녕 김씨와 관련한 전승고문서의 종류와 내용

| 연번 | 문서종류 | 작성시기      | 내용  | 비고     |
|----|------|-----------|---|--------|
| 1  | 호적자료 | 1804~1855 | 김도옥, 김상리, 김영규의 戶籍中草와 準戶口에 각각 妻, 母, 祖母로 기재 |        |
| 2  | 家牒   | 19세기 중반   | 김도옥의 처                                    |        |
| 3  | 分財記  | 19세기 중반   | 五世 김도옥의 배우자로 기재                           | 葬事擇日紙  |
| 4  | 분재기  | 1783.3.11 | 시아버지 김덕경에게 밭을 상속받음                        | 初謁日別給記 |
| 5  | 분재기  | 1820.3.24 | 재주(母)로서 2남 6녀에게 재산을 상속                    | 都許與文   |
| 6  | 분재기  | 1820.3.25 | 재주(母)로서 아들 형제에게 우마를 분급                    | 牛馬分給記  |
| 7  | 분재기  | 1838.2.27 | 재주(祖母)로서孫婦 김영규의 처 오씨에게 재산을 별급             | 初謁日別給記 |
| 8  | 분재기  | 1845.4.15 | 재주(嫁祖母)로서 次孫婦 김영두의 처 부씨에게 재산을 별급          | 別給文    |
| 9  | 분재기  | 1845.4.15 | 재주(母)로서 차남 김상항에게 밭을 상속                    | 許給文    |

이들의 경제기반-김덕경 가계의 ‘상속 및 거래’ 문서를 중심으로」(『지방사와 지방문화』 18-1, 2015)을 참조하기 바라며, 지면 관계상 여기서는 그것을 반복하지 않는다.

13) 이옥부, 앞의 논문(2018), 269쪽.

14) 이옥부, 앞의 논문(2018), 273쪽.

金在重의 딸인 김녕 김씨는 김도옥과 혼인하여 김해 김씨 가문의 구성원이 되었다. 그녀는 1804년 김도옥의 호적중초에 부인으로 처음 등재되었는데, 당시 나이는 37세였다.<sup>15)</sup> 이것을 토대로 그녀의 출생 연도를 산출하면, 그녀는 1768년 戊子生이며, 남편 도옥은 그녀보다 다섯 살 많은 1763년 癸未生이다.<sup>16)</sup> 두 사람은 그녀가 15세 되던 무렵 혼인하였다. 그리고 그로부터 1년 정도 지나 16살이 되던 1783년 무렵 남편 도옥의 가족은 그녀에게 약간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이것이 며느리에게 재산을 중여하는 초알일 별급이다.

김씨는 남편 도옥과의 사이에 2남 6녀의 자녀를 두었다. 그런데 이들 8명이 모두 김씨의 자녀는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첫 딸의 출생연도는 1779년 己亥生이므로, 만약 그녀가 김씨의 딸이라면 김씨는 12세에 첫 딸을 낳은 셈이 된다. 이때는 그녀가 아직 혼인하기 전이며, 통상 자녀를 출생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었다. 그러므로 첫 딸은 남편 도옥이 첫 배우자와의 사이에 낳은 자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김씨보다 먼저 혼인한 도옥의 첫 배우자는 누구일까. 자식까지 낳았지만 그녀에 대한 기록은 전승고문서 중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당시 남성이 사별한 후 재혼하는 일은 드물지 않게 일어났고, 이 경우 족보에는 두 배우자를 모두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다.<sup>17)</sup> 그렇기 때문에 그녀에 대한 기록을 전혀 남기지 않은 사실은 두 사람이 혼인 후 사별이 아닌 이유로 헤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생각된다.<sup>18)</sup> 두 사람이 어떤 이유로 혼인을 해소했던 두 사람 사이에 생겨난 딸이 남편 도옥의 첫 자식으로 받아들

15) 김녕 김씨의 부친은 出身 金在重이며, 조부는 통정대부 金萬昌, 증조부는 가선대부 金碩, 그리고 외조부는 가선대부 鄭孝蓮(晉州 鄭氏)이다. 1804년 김도옥(前城將, 42)의 호적중초. 이옥부·이훈상, 앞의 책, 103쪽.

16) 그녀는 1804년 김도옥의 호적중초에 처음 기재된 후 1855년 金英奎의 준호구에 94세의 祖母로 등재된 것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호적자료에 보이지 않는다. 아마 이 즈음 그녀가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그 사이 그녀의 출생일은 3번 바뀌었다. 처음 기재된 김도옥의 호적중초에는 1768년 戊子生이었으나 이후 1761년 辛巳生, 1762년 壬午生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현상은 김씨 가문에 시집온 대부분의 여성에서도 발견된다. 호적자료에서 출생일의 변동이 역 부과와 관련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제주도 여성의 역 부담 여부와 관련하여 주목해 볼 문제이다. 김상옥, 「조선후기 제주지방 군사제도」,『19세기 제주사회 연구』, 일자사, 1997, 69~70쪽; 김일우, 「고려·조선시대 외부세력의 제주진입과 제주여성」,『한국사학보』 32, 2008, 163~166쪽.

한편, 김씨가 90세 이상까지 산 기록과 관련하여 『신증동국여지승람』(1530)에서 제주도 풍습으로 ‘질병이 적어서 일찍 죽는 사람이 없고 나이 팔구십 세까지 사는 사람이 많다(土人少疾病無夭年至八九十世歲多)’라는 기록이나 1883년(고종 20) 제주목사가 ‘매년 보고하던 毒職 대상자(90세 이상)가 올해는 없다’고 보고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 지역에 그녀처럼 장수하는 사람은 비교적 많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제38권 전라도 제주목; 고창석·김상옥 역주, 『제주계록』, 제주발전연구원, 2012, 487쪽.

17) 姜大翁의 경우 81세 되던 해인 1806년 작성된 분급문기의 서문에 첫 결혼(初娶)으로 두 딸을 얻고, 두 번째 결혼(後娶) 3남 1녀를 얻었다는 사실을 기록하여 두 번 혼인한 사실을 직접 밝히기도 하였다. 고창석, 앞의 책, 430~431쪽.

18) 김덕경 후손가의 가첩에는 두 번 혼인한 경우 두 배우자를 모두 밝히고 있다. 이옥부·이훈상, 앞의 책, 256~258쪽. 한편, 전근대 시기 제주도 지역의 이혼과 관련하여 두 개의 주목할 만한 사례가 있다. 하나는 1785년(정조 9) 金潤玉이 嫫庶를 변별해 달라며 上言한 일로, 이에 따르면 조부 김서경은 제주목사에게 貶妻(고씨)를 청하여 허락을 얻은 후 다른 여성(문씨)과 재혼했는데, 이후 고씨가 사망하면서 두 여성의 자녀들 사이에 正妻 여부와 상복 착용 기간을 둘러싸고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되자 비변사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 국법(黜妻改娶 國法之所不許)을 들어 두 여성 모두를 쳐로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禮書 2절을 하사하는 동시에 출처를 허락한 제주목사 등은 처벌하도록 하였다(『승정원일기』 정조 9년 5월 12일; 정해운, 「조선후기 이혼 위기에 처한 여성들」『여/성이론』 26, 2012, 117~118쪽). 다른 하나의 사례는 1899년 포교를 목적으로 입도한 외국인 신부의 눈에 비친 제주도의 혼인 모습으로, 그는 “미신을 많이 숭상했고, 합법적으로 혼인한 부부가 매우 드물었다. 그들에게 통행되는 혼인법은 쉽게

여진 것은 분명하다.<sup>19)</sup>

김씨가 남편과의 사이에서 얻은 첫 자식은 이름이 尚履이다. 그는 1787년 丁未生으로, 그녀가 22세에 처음 얻은 아들이다. 이후로 그녀는 아들 상항과 다섯 명의 딸을 더 낳았는데, 가장 어린 딸은 1806년 생으로, 39세에 낳았다. 이로써 그녀가 7명의 자녀를 출산하면서 대략 20년 동안 임신과 출산을 반복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밭농사는 논농사에 비해 많은 노동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김씨 가문에서 중요한 인물로 간주되었다면 많은 자식도 그 중 하나의 이유였을 것이다. 실제로 그녀의 자녀들은 대부분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았는데, 이들과의 관계는 그녀가 김씨 가문에서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영향력 행사는 그녀가 재혼한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김씨는 1819년을 전후하여 남편과 死別하고 한동안 8명의 자녀를 키우며 계속 혼자 살았다. 그러다가 20여 년이 지난 1840년대 무렵, 그러니까 70대 후반에 再婚하였다.<sup>20)</sup> 재혼 후에도 그녀가 자녀들과 동거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재혼으로 인해 가족 사이에서 어머니나 할머니로서 그녀의 위상이나 입지가 축소된 것 같지는 않다. 그녀는 할머니로 손자 金英奎의 호적에 계속 등재되었고, 차남 尚恒과 차손부 英斗의 처 夫氏, 특히 부씨에게는 재혼한 할머니의 자격으로 재산을 상속하고 있기 때문이다(〈표 1〉의 8번과 9번 문서). 이것은 기록을 전혀 찾을 수 없던 남편 김도옥의 첫 배우자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김씨와 남편의 첫 배우자, 두 사람은 모두 자녀를 출산했다. 자녀수에서 나타나는 큰 차이가 두 사람이 남편의 가문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도 어느 정도 작용했을 것이다.

이렇듯 김녕 김씨의 삶은 이혼과 사별, 재혼과 같은 다양한 혼인의 관행들과 직간접적으로 얹혀 있다. 그녀는 10대 중반에 혼인하여 김해 김씨 가문의 며느리가 되었고, 50세를 전후하여 남편과 사별하며 과부가 되었다. 그 이후에는 계속 과부로 살았다는 호적자료도 남아 있지만 스스로 혼인한 사실을 밝힌 분재기로 미루어 볼 때 재혼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사실에 부합한다고 생각된다.<sup>21)</sup>

헤어지기도 하고 결합되기도 하는 것”이라고 기술하였다(김옥희, 「제주도 천주교의 수용전개 과정」, 『탐라문화』 6, 1987, 151~152쪽 재인용). 두 사례 모두 이혼과 재혼이 제주도 지역에서 드물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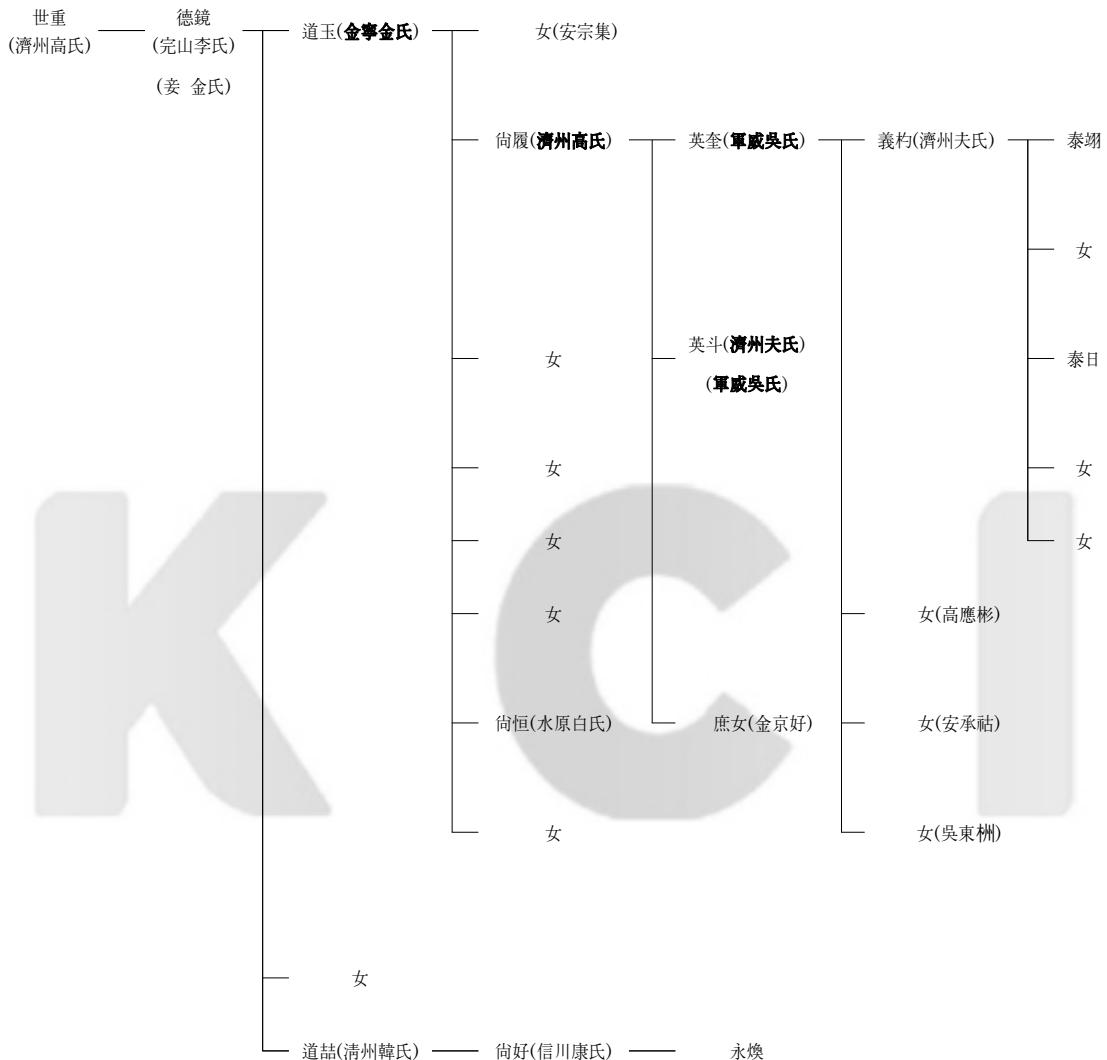
조선총독부가 실시했던 지방관습조사의 내용이나 1910년대 법정에서 이루어진 이혼소송 판례 또한 이혼과 유사한 형태의 혼인 해소가 전근대 조선 전역에서 빈번했던 사실을 보여준다. 吉川絢子, 「植民地朝鮮における離婚訴訟と朝鮮民事令」, 『史林』 49-5, 2011, 739~740, 754~755쪽.

19) 이와 관련해서는 도옥의 부친 김덕경의 사례가 주목된다. 김덕경은 첨 김씨와의 사이에서 서자 도철을 낳았다. 도철은 재산상속에서 嫫子女인 도옥과 딸에 비해 훨씬 적은 몫을 상속받았는데, 특히 적처인 完山 李氏로부터 유래한 토지는 거의 상속받지 못했다. 그렇지만 도옥의 첫 딸은 상속에서 그러한 차별을 두드러지게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乾隆伍拾貳年丁未正月拾柒日各子息亦中都許與成文」, 「嘉慶貳拾伍年庚辰三月貳拾肆日各子女等處分衿道許與文」, 이옥부·이훈상, 앞의 책, 216쪽, 229~231쪽; 이옥부, 앞의 논문(2015), 140~141쪽.

20) 그녀의 재혼 사실은 1845년 4월 15일 작성한 분재기에 ‘嫁祖母’로 기재한 데서 알 수 있다.

21) 70대 후반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김씨가 재혼한 사실은 사별한 여성의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보여주는 한편, 장성한 자녀가 있는 여성의 혼인이라는 점에서 여성의 재혼이 당시 사회에서 드물지 않게 일어났을 개연성을 시사한다. 재혼을 금하는 법률이나 관습과 달리 민간에서 재혼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한밀 조선에 온 선교사들의 기록에서도 종종 발견된다. 이것은 18세기 전후하여 재혼을 둘러싸고 적어도 서로 다른 두 개의 충위가 존재했던 사실을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한편에서는 가부장적 도덕지침을 훈육할 목적으로 제작된 규훈 텍스트들이 활발하게 유통되며 여성에게

### 〈세계도〉 金德鏡 家系의 世界圖(22)



수절을 요구하는 문화가 상층 지배집단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었다면 다른 한편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보아, 재혼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여성들이 여전히 많았다는 사실이다. Dallet, Charles/ 양웅렬·최석우 역주, 『한국천주교회사(상)』, 한국교회사연구소, 1987, 197~198쪽; 강명관, 『신태영의 이혼 소송 1704~1713』, 휴머니스트, 2016, 12~13쪽.

- 22) 구좌읍에 세거한 김해 김씨 가문 모든 구성원들의 세계도는 이옥부, 앞의 논문(2015), 124쪽 참조.  
한편, 安宗集과 혼인한 김도옥의 첫 딸처럼 정황상 前妻의 子女거나 庶子女로 생각되는 경우라도 문서로 이를 명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세계도에는 이를 구분하지 않았다.

아쉽게도 현재 전승하고 있는 문서 중에는 김씨의 재혼 이유를 알 수 있거나 추론할 수 있는 문서가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녀가 어떤 이유로 재혼을 했던, 재혼으로 인해 도덕적 비난에 직면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재혼 후에도 김씨가 자녀나 시댁인 김해 김씨 가문과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다. 그녀의 사례가 재혼에 대한 제주도 지역민들의 일반적인 반응인지, 혹은 8명에 이르는 많은 자녀를 둔 어머니에 대한 예외적인 사례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앞에서 언급했듯이 김녕 김씨는 김덕경의 가계에서 행해진 6건의 초알일 별급 중 4건에 직접 관련되고 있다. 그 중 1건은 시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인의 입장이고, 나머지 3건은 제주로서 재산을 상속하는 피상속인의 입장이다. 통상 별급은 모든 자녀를 상속 대상으로 하는 허여분급과 달리 재주의 의사에 따라 상속의 대상과 이유가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을 중여하는 이유와 그 대상을 분석하면 역으로 재주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재산을 상속했는지를 읽어내는 것도 가능하다. 다음에서 살펴볼 김녕 김씨가 작성한 3건의 초알일 별급문기도 이러한 ‘재주의 의지’에 초점을 맞추면서 상속과정에서 재주가 어떤 의도를 가졌고, 그것이 제주도의 상속 관행이나 여성의 경제적 위상과는 어떤 상관성을 가지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현재 문서로 확인되는 김녕 김씨의 첫 재산은 혼인하면서 상속받은 古福員의 밭이다(1783.3.11).<sup>23)</sup> 시아버지 김덕경이 초알일 별급으로 중여한 이 밭은 1774년 8월 8일 김덕경이 吳始札로부터 매득한 땅이다.<sup>24)</sup> 김덕경이 소유한 토지의 다수는 1761년부터 1787년까지 집중적으로 매입되었는데, 매입에 사용한 경비는 그가 把摠과 馬監을 역임하면서 구축한 사회적 지위와 처가인 완산 이씨 가문으로부터 상속받은 많은 토지에서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sup>25)</sup> 이후 김덕경은 재산의 대부분을 서자 道喆을 포함하여 도옥과 딸 등 2남 1녀의 자녀에게 상속했고(1816년 1월 17일),<sup>26)</sup> 초알일 별급으로 며느리 김씨에게도 일부 상속했다. 그런데 도옥의 재산상속 내역을 살펴보면 부인 김녕 김씨가 상속받은 고복원의 밭은 포함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고복원의 밭은 어떻게 되었을까.

18세기를 전후하여 조선에서는 장자우대 불균등 상속이 확산되면서 딸은 재산상속에서 점차 배제되어 갔다. 이와 동시에 혼인하면서 여성의 가액은 재산도 남편에게 귀속되는 과정을 거쳤다. 그리하여 자녀 없이 여성의 죽을 경우 이전에는 처가로 돌아갔을 재산을 이제는 대부분을 남편 가족이 보유하고, 나머지는 제사 상속자에게 주도록 하였다.<sup>27)</sup> 그렇다면 제주도에서도 육지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재산권이 남편이나 제사 상

23) 「乾隆肆拾捌年癸卯三月十一日長婦金氏處初謁日別給記」, 이옥부·이훈상, 앞의 책, 215쪽.

한편, 혼인하는 모든 자녀와 그 배우자에게 재산을 별급(成婚別給, 初謁日別給)하는 제주도의 상속 관행을 고려하면 그녀가 처가의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전승고문서만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하여 여기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乙未九月初三日第八女成婚日別給」, 「康熙陸拾年辛丑八月二十四日次女成婚日別給」, 「乾隆參拾參年戊子柒月拾壹日第參女高氏處別給」, 고창석, 앞의 책, 468쪽, 482쪽, 488쪽 참조.

24) 「乾隆參拾玖年甲午捌月初八日金德鏡處明文」, 이옥부·이훈상, 앞의 책, 181쪽.

25) 이옥부, 앞의 논문(2015), 129~130, 146~147쪽.

26) 「乾隆伍拾貳年丁未正月拾柒日各子息亦中都許與成文」, 「乾隆伍拾貳年丁未正月拾柒日長子金道玉(결략)」 이옥부·이훈상, 앞의 책, 216~217쪽.

27) Deuchler, Martina/ 이훈상 역, 앞의 책, 301~304쪽.

속자에게 귀속되는 과정을 밟았을까. 김씨가 상속받은 고복원 밭의 향방을 통해 그 변화를 추적할 수 있을 것이다.

김씨가 상속받은 고복원의 밭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의 문제는 여성의 경제적 위상과 나아가 여성의 재산 소유 여부와 관련하여 중요하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그녀가 재주로 재산권을 행사한 사례를 살펴보았다. 고복원의 밭이 다시 등장한 곳은 長孫婦 軍威 吳氏의 초알일 별급문기이다. 1838년 2월에 작성된 이 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별급은 며느리를 맞이하여 달리 별급할 것이 없어 내가 시아버지로부터 받은 별급전 오시찰에  
께서 매득한 고복원 3곳 속종 1두 2승 부지 안에 있는 북면 속종 9승 부지를 영원히 별급하니 이후  
자손들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이 문기를 가지고 가서 바로 잡을 것”<sup>28)</sup>

문서에 따르면 고복원의 밭은 김녕 김씨로부터 장손부 김영규의 처 군위 오씨에게 별급되었다. 재주가 김씨라는 사실은 고복원 밭의 소유자가 김씨이며, 이 땅이 남편 도옥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재산이 할머니 김씨에서 장손부 오씨에게 상속되었고, 그것이 세대가 다른 여성 사이의 상속이라는 사실이다.

별급에서 상속 대상은 전적으로 재주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므로 오씨가 초알일 별급의 상속인이 된 것은 시할머니 김씨가 오씨에게 재산을 상속하기로 한 결정에 따랐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김씨는 오씨를 상속인으로 삼았을까. 물론 혼인을 축하하는 뜻에서 시할머니가 손자며느리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일은 드물지 않다. 그러나 18세기 이후 상속제도에 나타난 변화는 아들을 우대하며 부계 혈연을 강조하는 추세였고, 제주도 또한 19세기 전반에는 이러한 경향을 따르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그것을 결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 물음을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 질문을 바꾸어 보자. 왜 김씨는 혈연으로 이어진 손자 김영규가 아니라 손자며느리 오씨에게 별급했을까. 김씨가 혼인한 당사자 두 사람 모두에게 별급문기를 작성해 주었다면 둘 중 영규의 것만 사라지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그런 까닭에 김씨는 처음부터 오씨를 상속인으로 삼아 재산을 증여하려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혼인을 축하하는 뜻으로 별급할 때 그 대상은 주로 남성이다. 여성, 그것도 김씨나 오씨처럼 시집온 며느리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게다가 김씨가 재산을 별급하던 19세기 초반은 제주도도 부계 혈연을 강조하는 유교 문화가 확산되면서 재산상속에서 차등 상속의 경향이 점차 뚜렷해지던 시기였다. 실제로 상속에서 아들을 우대하는 모습은 김해 김씨 김덕경의 가계를 포함하여 500여점 가까운 고문서 (분재기 27점 포함)를 전승하고 있는 어도 晉州姜氏 姜受璜 후손가나 같은 晉州姜氏 姜鳳祉 후손가에서 19세기에 작성한 여러 분재기에서도 쉽게 확인되는 내용이다.<sup>29)</sup> 그렇기 때문에 손자며느리를 상속인으로 삼은

28) “右別給事段 當此取婦之日 他無別許物故 吾之舅父主別給田 吳始札處買得田 古福員三庫合粟種壹斗 貳升付只內 北邊  
粟種玖升付只 永爲謁給爲去乎 日後子孫中○有相爭之弊 則此文記憑考事 “「道光十八年戊戌二月二十七日長孫婦吳氏  
初謁日別給文」, 이옥부·이훈상, 앞의 책, 236쪽. 한편 제주도의 명문이나 분재기에 토지의 소재지나 규모를 지칭할  
때 자주 사용되는 ‘員’이나 ‘付只’에 대해서는 김지홍, 「溫平里 고문서 연구」, 『탐라문화』 6, 1987, 85~86쪽 참조.

김씨의 의도는 전략적인 측면으로 볼 필요가 있으며, 실제로도 그러했다고 생각된다.

손자며느리를 상속인으로 삼은 김씨의 의도는 그녀가 선택하지 않는 다른 상속의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김씨는 남편이 죽고 1년이 지난 1820년 3월 24일 2남 6녀의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한다.<sup>30)</sup> 상리와 상항의 두 아들은 6명의 딸들 각각이 상속받은 분급액의 3배에 달하는 재산을 상속받았고, 이후 이들 가문에서 아들을 우대하는 상속은 정착된 듯하다. 상리와 상항은 토지와 별도로 각기 草家 3간의 가옥도 2채씩 상속받았다.<sup>31)</sup> 그리고 다음날 작성된 牛馬分給記에 따르면 두 사람만 말과 소도 상속받았다. 가옥이나 우마 상속에서 딸들은 완전히 제외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자녀들의 재산상속 내역을 살펴보면 김씨가 시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고복원은 밭은 8명 중 누구에게도 상속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김씨는 1838년 장손부 오씨에게 이 땅을 상속할 때까지 자신이 이 땅을 계속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남편이 죽은 후 자신의 생계를 영위할 목적인지, 아니면 상속권을 행사할 목적인지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전자라면 19세기 전반까지 김덕경 가계는 자녀들이 혼인하면 분가하는 관행을 따랐을 가능성이 있다.<sup>32)</sup> 후자라면 여성의 재산권 행사를 경제적 의미와 더불어 문화적, 상징적 측면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필자는 두 가지 이유 모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후자는 초알일 별급 관행의 지속과 관련하여 주목하는 지점이다.

한편, 1820년의 상속문서는 김씨가 자신의 재산을 혈연으로 이어진 자녀들에게 상속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동시에 오씨를 상속인으로 한 별급이 매우 의도적인 판단아래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런데 여성의 재산 소유와 관련해서도 이 문서는 흥미로운 사실을 적고 있다. 바로 장남이 상속받은 마락원 소재의 밭 동쪽 경계로 표시된 ‘나의 밭(吾之田)’의 존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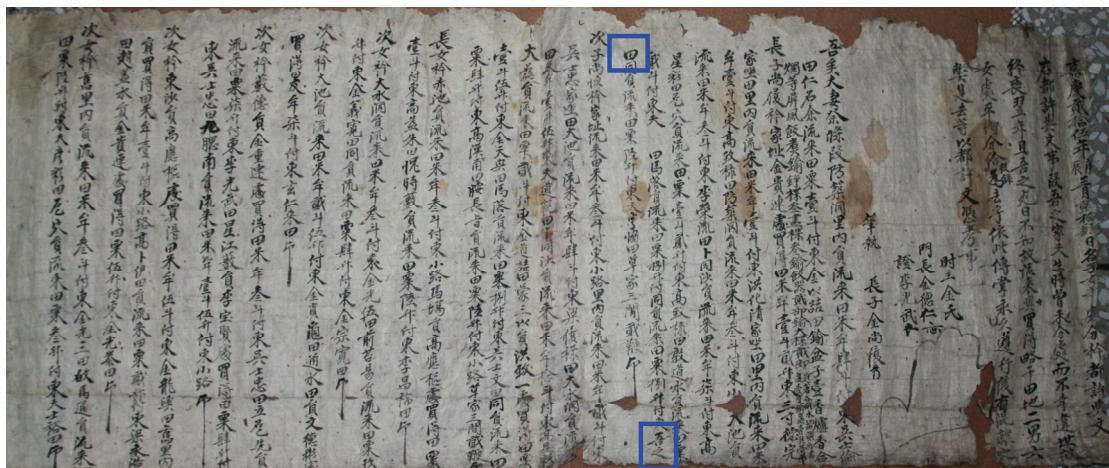
29)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서집성110-제주 어도 진주강씨·조천 김해김씨·구좌 동래정씨 고문서』, 2014, 483~486쪽, 488~489쪽, 491쪽.

30) 「嘉慶貳拾伍年庚辰三月貳拾肆日各子女等處分衿道許與文」, 이옥부·이훈상, 앞의 책, 229~231쪽.

상속 내역을 통해 알 수 있지만 김덕경 후손가가 소유했던 밭의 대부분은 ‘米车’를 재배했다. ‘밭벼(산디)’로 추정되는 이 작물은 제주도 다른 지역의 고문서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 반면 이들이 세거했던 구좌읍의 매매나 상속 문서에는 빈번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방축동 인근에서 밭벼의 재배가 많았던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송당리에 거주하는 허순희씨(1932년생)의 구술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제주:여성사 자료총서 VII 제주여성 근·현대사 구술자료② 제주여성의 생애 살암시난 살았주』, 도서출판 각, 2006, 99쪽.

31) 제주도의 호구단자 중에는 말미에 식구와 집채의 크기를 명시하는 경우가 있으며, 김지홍은 ‘間’으로 표기된 집채의 크기를 1간은 1평(사방 6尺의 면적)을 의미하기도 하고 고광민의 제보처럼 집안 내부의 구획된 공간, 즉 1간이면 한 채의 집 안에 한 개의 공간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김지홍, 앞의 논문, 80~81쪽.

32) 최재석, 『제주도의 친족조직』, 일지사, 1984, 19쪽; 佐藤信行, 「濟州道の家族-村の事例から」, 『韓國農村の家族と祭儀』, 東京大學出版會, 1973, 122~123쪽.



〈사진 1〉 1820년 3월 24일 작성된 都許與文

여기서 ‘나의 밭’은 곧 김씨의 밭을 의미한다. 문서의 작성자가 본인을 ‘나(吾)’로 표기한 사례는 김덕경 가계의 전승고문서를 포함하여 문서를 전승하고 있는 대부분의 가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sup>33)</sup> 흥미로운 점은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면서 김씨가 자신의 밭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르면 김씨는 고복원의 밭에 이어 마락원에도 밭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를 자녀에게 상속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마락원의 밭은 이후 어떻게 처분되었을까.

고복원의 밭이 1838년 장손부 오씨에게 초알일 별급으로 상속된 사실은 이미 언급했다. 그런데 마락원의 밭 또한 손부에게 초알일 별급으로 상속한 사실이 문서를 통해 확인된다. 1845년 4월 작성된 별급문기는 마락원의 밭이 차남 영두의 처 제주 부씨에게 상속된 사실을 적고 있다. 초알일 별급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이 별급문기는 형태나 내용으로 보아 초알일 별급문기가 분명하다.<sup>34)</sup>

이로써 김씨는 자신이 소유하던 두 곳의 토지·현재 문서상 확인되는 토지가 두 곳이라는 의미이며, 더 많은 토지를 소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를 모두 자녀가 아닌 손자며느리들에게 상속하고 있다. 물론 김씨 재산의 일부는 손부들의 뜻보다는 적지만 차남 상항에게도 상속되었다.<sup>35)</sup> 이것은 다른 자녀들도 재산을 상속받았으며, 동시에 김씨가 손부와 여러 자녀들에게 상속할 정도로 많은 재산을 소유했을 가능성도 암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은 문서로 확인되지 않은 추론에 그칠 뿐이며, 오씨와 부씨 두 손부가 재산을 상속받은 것은 초알일 별급문기를 통해 분명하게 확인되는 사실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김씨가 초알일 별급으로 아랫세대의 여성에게 자신의 재산을 상속한 사실이다. 그리고 이 과정은 혈연으로 이어진 자녀들에

33) 김덕경 가계의 경우 다수의 명문과 분재기에서 ‘吾’는 ‘矣身’과 더불어 작성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일례로 前鄉 吳道澄이 김덕경에게 토지를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1763.7)에도 ‘吾當此荒年…’이라 적어, ‘吾’가 계층에 구분 없이 여러 가문에서 자주 사용되던 용례임을 알 수 있다. 이옥부·이훈상, 앞의 책, 169쪽; 한국학중앙연구원, 앞의 책, 2014, 480~481쪽.

34) 이옥부, 앞의 논문(2018), 278쪽.

35) 상항의 상속 사실은 장손부 오씨의 상속 내역을 재차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난다. 이옥부, 앞의 논문(2018), 279쪽.

게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면서 이루어졌다.

이처럼 문서를 통해 확인되는 김씨의 재산 소유와 상속은 제주도의 상속 관행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두 가지 사실을 시사한다. 하나는 제주도 지역의 여성들이 남편이나 자녀와 별개로 자신의 재산을 소유한 사실이고,<sup>36)</sup> 다른 하나는 초알일 별급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아랫세대의 여성에게 상속하려는 여성들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김덕경 가계의 전승고문서는 김씨가 자신의 재산을 손부들에게 상속한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오씨와 부씨의 두 손부는 김씨와 가족이지만 직접적인 혈연관계는 없다. 그렇지만 세 사람은 혼인을 통해 다른 가문의 일원이 되었다는 공통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재산을 주고받으며 세 사람 사이에 형성된 경제적 유대는 이러한 공통된 경험을 공유하며 더 밀착될 수 있었을 것이다.<sup>37)</sup>

이렇듯 김녕 김씨의 사례는 재산을 소유한 여성이 초알일 별급의 형식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혈연으로 연결된 자녀가 아니라 아랫세대의 여성에게 상속하는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런데 여성들 사이의 세대간 상속은 김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김덕경 가계에 시집온 여성이나 김씨의 며느리인 제주 고씨 또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자녀가 아닌 며느리 오씨에게 상속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장에서 살펴보려고 한다.

## 2. 고씨 부인의 재산 소유와 상속

김덕경 가계의 전승 문서 중 婚書는 8점이 있다. 이 중 1804년 11월 29일에 작성된 혼서는 김녕 김씨의 첫 아들 金尙履가 혼인할 당시 작성된 것이다.<sup>38)</sup> 이 혼서에 따르면 상리의 부인은 濟州 高氏 高聖相의 딸이다(1790년 庚戌生).<sup>39)</sup> 14세 무렵 혼인하여 김씨 가문의 며느리가 된 고씨는 시어머니 김씨와 마찬가지로 혼인하고 6개월 정도 지난 1805년 4월 12일 시아버지 김도옥으로부터 초알일 별급으로 약간의 재산을 상속 받았다. 高應樞로부터 매득한 萬升伊員 소재의 밭과 암소 1마리가 그것이다[자료 사진 2 참조]. 고씨가 중여 받은 만승이원의 밭은 1795년 1월 흥년으로 家率들의 생계가 곤란해진 고옹추로부터 김도옥이 正木 6필의 값을 지불하고 구입한 밭으로,<sup>40)</sup> 각각 高星贊, 高應九, 高敬元, 그리고 吳最亨의 밭과 四面을 접하고 있다.

36) 1970년대 이후 마을 조사의 일환이지만 제주도는 가옥이나 토지의 일부만 상속하고, 일부는 남겨 자신이 관리하며 생활하는 가족의 비율이 40% 이상이라는 보고도 있다. 김혜숙, 앞의 책, 94~95쪽.

조선후기의 경우 여성은 남편의 부인 자격이 아닌 아들의 어머니로서 자격을 얻을 때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 친국장에서 이루어진 영조와 이경의 대화이다. 『영조실록』 영조 28년 4월 19일; 정지영, 『질서의 구축과 균열: 조선후기 호적과 여성들』,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5, 265~271쪽 제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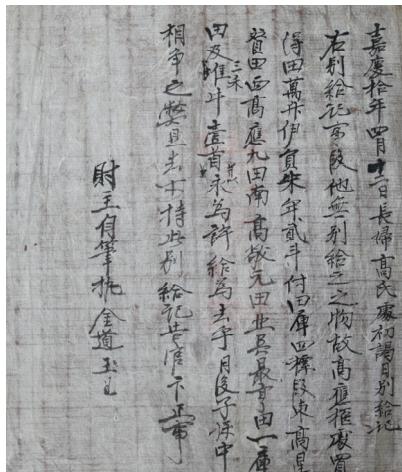
37) 김두현, 『한국가족제도연구』, 서울대 출판부, 1969 참조.

38) 이옥부 · 이훈상, 앞의 책, 279쪽.

39) 祠生 김상리의 준호구와 고씨 부인의 묘비명(1866년 12월). 이옥부 · 이훈상, 앞의 책, 68쪽, 266쪽.

고씨의 부친 고성상은 김상리(33세)의 1819년 준호구에는 학생으로 기재되었지만, 아들이 작성한 고씨 부인의 묘비명에는 靑衿으로 기재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이들 가문이 유향직으로 진출하면서 나타난 변화였다.

40) 1795년 고옹추로부터 이 땅을 매득하던 당시에는 동서남북으로 각각 高星贊, 高信賢, 高鳳永, 吳最亨의 밭과 4면을 접하고 있었는데, 10년이 지난 1805년 고씨에게 상속할 때는 서쪽과 남쪽은 각각 고옹구와 고경원으로 밭의 주인이 달라졌다. 「乾隆陸拾八年乙卯正月貳拾伍日金道玉處明文」, 이옥부 · 이훈상, 앞의 책, 188쪽.



〈사진 2〉 제주 고씨의  
초알일별급기(1805.4.12)

시아버지 김도옥은 부친 김덕경이 조성한 경제적 기반을 토대를 재산을 불리는데 성공하여 많은 재산을 축적했다. 그리고 그 중 일부를 며느리 고씨에게 초알일 별급으로 중여하였다. 이 재산은 시어머니 김녕 김씨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남편 상리에게 귀속되지 않고 고씨의 소유가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1838년 상리가 작성한 초알일 별급문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문서는 고씨의 재산 소유 여부와 더불어 이후 고씨의 재산이 어떻게 처분되는가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한편, 고씨는 상리와 혼인하여 영규와 영두의 두 아들을 낳았다. 첫 아들 영규는 1827년 丁未生으로, 고씨가 38세에 처음 얻은 자식이다. 그런데 김상리의 준호구에 따르면 그에게는 1808년 戊辰生의 庶女가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나온다. 상리가 20세 되던 무렵 태어난 이 딸은 고씨가 아닌 다른 여성의 딸로, 서녀로 표기된 걸로 보아 모친이 상리의 妾이었다고 생각된다. 고씨와 상리가 혼인하고 4년 만에 서녀가 태어난 것을 고려하면 두 사람 사이에 자식이 생기지 않자 첨을 들였을 가능성도 있는데, 문서로는 더 이상 확인되지 않는다.

김상리가 첨을 둔 사실과 관련하여 조부 김덕경의 첨과 부친 김도옥의 첫 배우자의 사례는 혼인의 성격과 이에 따른 자녀들의 위상이라는 측면에서 비교할 만하다. 김상리와 마찬가지로 김덕경 또한 첨을 두었다. 차남 도철의 모친인 그녀는 김녕 김씨 金南三의 딸로 40대 중반인 1783년 김덕경의 준호구에 첨으로 처음 등재되었다.<sup>41)</sup> 이후 덕경의 호적자료에 부인 완산이씨와 첨 김씨가 함께 등재되다가 1804년부터 김씨는 자신이 낳은 아들 도철의 호적에 옮겨 기재된다.<sup>4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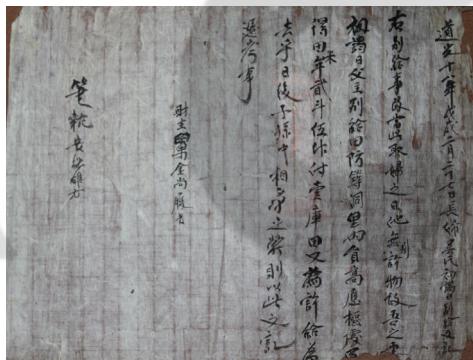
앞에서도 보았듯이 첨의 아들로 태어난 도철은 적처인 완산 이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지 못했지만, 호적이나 다른 공문서에서 서자로 표기되거나 차별을 받은 혼적도 발견되지 않는다. 도철이 서자라는 사실은 도철의 아들 尚好가 술에 빠져 조상의 祭田을 몰수당할 상황에 처하자 5촌 김영규가 제전의 몰수를 막아달라

41) 前把摠 김덕경(43)의 준호구, 이옥부·이훈상, 앞의 책, 62쪽.

42) 家率 김도철(21)의 호적증초, 이옥부·이훈상, 앞의 책, 104쪽.

고 1862년 관에 올린 所志에서 처음 밝혀진다.<sup>43)</sup> 이것은 김상리가 딸을 서녀로 호적자료에 기재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김영규가 관에 소지를 올리던 1860년대 무렵 김덕경의 가계는 婦庶의 구별을 분명히 드러내기 시작한다. 김덕경과 김상리가 공식, 비공식적으로 첨을 통해 자식을 얻은 것처럼 김도옥도 부인 김씨가 아닌 다른 여성에게서 첫 딸을 얻었다. 그러나 앞서 두 경우와 비교하면 호적자료나 분재기 어디서도 딸에 대한 차별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때 이 딸은 적자녀였고, 때문에 도옥의 첫 배우자는 첨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듯 고씨 또한 시어머니 김녕 김씨와 마찬가지로 여러 혼인 관행들과 얹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고씨는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47세가 되던 1837년 무렵 사망했다.<sup>44)</sup> 1년 후인 1838년 경 장남 영규가 혼인했으니, 아들의 혼인을 보지 못하고 죽었을 가능성이 높다. 90세 중반까지 살면서 직접 재산권을 행사한 김씨와 달리 자녀의 혼인도 보지 못하고 고씨가 죽었다면 그녀의 재산은 이후 어떻게 처분되었을까. 앞서 고씨가 초일일 별급으로 시아버지 도옥으로부터 만승이원의 밭을 상속받은 사실은 언급했는데, 이 땅과 관련하여 고씨가 직접 작성한 문서는 없다. 그렇지만 남편 상리가 작성한 초일일 별급문기를 통해 만승이원 밭의 향방을 추적할 수 있다. 다음은 김상리가 작성한 초일일 별급문기의 내용이다.<sup>45)</sup>



〈사진 3〉 군위오씨의 초일일

별급문기(1838.2.27)

“이 별급은 이번 며느리를 맞이하는 날에 달리 별급할 것이 없어 나의 쳐 초일일에 아버지로부터 별급 받은 방축동리내원의 고옹추에게서 매득했던 미모 2두 5승부 한 곳을 허급하니 이후 자손 중에 분쟁의 폐가 있으면 이 문기를 가지고 바로잡을 것”

43) 1862년 윤8월 김영규가 올린 소지와 다음 달인 1862년 9월 김영규 門中の 內外族이 올린 소지. 도철의 아들 상호를 ‘曾祖之庶孫’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옥부·이훈상, 앞의 책, 271~273쪽.

44) 제주 고씨는 1837년에 남편 김상리(前掌議, 51)의 준호구에 마지막으로 기록되었다. 따라서 그녀의 사망은 이 무렵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옥부·이훈상, 앞의 책, 74쪽.

45) 이옥부·이훈상, 앞의 책, 236~237쪽.

문서에 따르면 상속인은 장남 영규의 처 군위 오씨로, 靑衿 吳寬裕의 딸이다. 오씨는 시할머니 김녕 김씨와 시아버지 김상리로부터 각각 초알일 별급으로 재산을 상속받았다. 조모 김씨는 자신이 소유하던 재산을 상속한 반면, 시아버지 부인 고씨 소유의 재산을 대신 상속했다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고옹추로부터 매득한 방축동리내원 소재의 밭이 고씨가 초알일 별급으로 받은 재산이기 때문인데, 이러한 사실은 김상리도 문서에서 밝히고 있다.<sup>46)</sup>

그런데 〈자료 사진 2〉를 보면 고씨가 별급 받은 땅은 만승이원에 있는 밭으로, 김상리가 명시한 방축동리 내원과는 밭의 소재지가 다르다. 이 차이는 두 문서가 30년의 시차를 두고 작성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두 밭은 모두 고옹추로부터 매득한 미모 2두 부지의 땅으로,<sup>47)</sup> 같은 사람에게서 매득한 같은 규모의 토지라는 사실로 미루어 동일한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특히 고씨가 1805년 이후 만승이원의 밭을 계속 소유하고 있었다면 30년이 지나 이 밭을 상속하면서 소재지를 대략적으로 밝힌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 즉 1838년 초알일 별급문기에 명시한 밭의 소재지를 특정 지명이 아니라 ‘방축동에 있는 곳’이란 의미로 이해하여 ‘만승이원’을 방축동에 있는 지명으로 보는 것도 가능한 것이다. 만약 두 곳을 각기 다른 곳으로 이해한다면 시아버지는 고씨에게 두 곳을 상속하면서 두 장의 초알일 별급문기를 작성한 셈이 되어 오히려 더 부자연스럽다. 두 곳을 같은 곳으로 보는 추론은 두 땅의 사면을 접하고 있는 밭의 소유자들이 고씨와 오씨로, 방축동이 이들 두 성씨의 집성촌이라는 사실도 고려한 것이다. 게다가 1816년 김덕경이 2남 1녀의 자녀들에게 재산을 상속하면서 所從來를 밝힌 아래 어떤 상속문서에도 더 이상 소종래를 밝히지 않았던 사실도 두 밭이 같은 곳이라는 추론에 힘을 실어준다.

그렇다면 상리는 땅을 상속하는 내용의 초알일 별급문기를 작성하면서 왜 부인 고씨가 초알일 별급으로 받은 밭이라는 사실을 밝혔을까. 필자는 이것이 고씨의 재산 소유를 확인하고, 그 처분에 있어 고씨의 의견을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즉 문서의 작성은 남편이 했지만 실제 상속인을 선택하여 상속한 사람은 부인 고씨인 것이다. 부인의 재산을 처분할 때 부인의 의사를 반영하는 사례는 일제강점기 조선고등법원의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당시의 판결이 당사자의 권리구제보다는 법적 안정을 중시하여 의도적으로 식민지 통치정책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 측면은 있지만, 그럼에도 부부가 각자의 재산을 공동 관리하더라도 그 재산을 처분하거나 어느 한쪽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소유권이 표면화된다는 지적은 고씨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sup>48)</sup>

이처럼 고씨는 시어머니 김씨와 마찬가지로 김씨 가문에 시집오면서 초알일 별급으로 재산을 상속받았다. 그리고 그녀가 사는 동안 소유했던 재산은 그녀의 사후 남편을 통해 며느리에게 초알일 별급으로 다시 상속되었다. 김씨가 자신의 재산을 손부인 오씨와 부씨의 두 아랫세대 여성에게 상속한 것처럼 고씨 또한 자신이

46) 본문 중 ‘나의 처 초알일에 받은 밭’을 부인의 초알일에 남편 상리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통상 제주도에서 혼인할 때 아들이 가족이나 친인척으로부터 받는 별급은 초알일 별급이 아니라 ‘成婚別給’으로 지칭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상리의 처 고씨가 별급 받은 재산이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옥부, 앞의 논문(2018), 281~282쪽.

47) 두 토지는 수확량에서 米车 5升 부지의 차이가 있지만, 같은 토지의 농업생산력 향상에 따른 차이 정도로 생각된다.

48) 김원태, 「일제강점초기 처의 特有財產에 관한 관습법-조선고등법원판결의 분석을 중심으로」, 『법사학연구』 31, 2005, 218쪽.

초알일 별급으로 상속받은 재산을 며느리 오씨에게 상속한 것이다.

### III. 상속을 통한 여성들의 결속과 협력

#### 1. 초알일 별급과 여성들의 경제적 유대

앞서 살펴본 김씨와 고씨의 사례는 김덕경 가계에서 초알일 별급의 관행이 3대 60년간 지속된 것과 이를 통해 직접적인 혈연관계가 없는 여성들 사이에 세대 간 상속이 이루어진 두 가지 사실을 보여준다. 김덕경 가계에서 며느리에게 밭과 우마 등 약간의 재산을 상속한 것은 19세기까지 제주도 지역의 전역에서 광범하게 확산되어 있던 초알일 별급 관행에 따른 것이다.<sup>49)</sup> 그렇지만 재산을 상속받은 여성이 김씨와 고씨처럼 초알일 별급을 통해 다시 아랫세대의 여성에게 자신의 재산을 상속하는 일은 관행보다는 이들 여성의 전략적 선택에 따른 결과로 생각된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여성들의 세대 간 상속이라는 전략적 선택이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졌고, 그 의도가 무엇인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려고 한다. 이것은 김씨와 고씨는 왜 며느리를 상속인으로 삼는 선택을 했는가를 묻는 데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18~19세기, 특히 19세기 전반을 전후하여 김덕경의 가계 내에서 부계혈연을 강조하며 종법 질서를 만들어가려던 활발한 움직임이다. 김덕경을 포함하여 그의 형제들은 모두 아버지 金世重을 이어 무임직을 수행했다. 이후 다른 형제들의 후손은 무임직을 계속 수행한 반면, 김덕경의 후손들은 사회, 경제적 기반을 토대로 더 나은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김상리와 김영규는 흩어진 가족의 자료를 수합하여 가첩과 忌日錄을 만들고,<sup>50)</sup> 처가를 따라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장손으로부터 位土를 구입하여 제전을 확보하는 등의 일에 앞장서며,<sup>51)</sup> 김해 김씨 문중 내에서 자신들의 가계가 주도적인 가계로 성장하는데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은 김덕경 가계의 가족 내에서도 나타났다. 그 예로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아들을 우대하고 딸을 배제하는 차등 상속의 경향이 뚜렷해졌다. 균분상속의 원칙이 망각된 것은 아니지만 가옥이나 우마, 祭器부터 시작해 점차 토지에 이르기까지 상속에서 아들의 뜻은 딸의 3배를 넘어서기 시작했다.<sup>52)</sup> 여기에는 부계 혈연의 계승자로서 아들의 입지가 계속 높아진 사실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이전에는 표면화

49) 이옥부, 앞의 논문(2018), 286~291쪽.

50) 이옥부·이훈상, 앞의 책, 256~259쪽.

51) 1816년 長孫 金貴連이 先祖의 掃祭條를 5촌 조카 김상리에게 방배하는데 있어 부친 金德寶와 삼촌 金德完이 문중의 일원으로 매매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볼 때 이 무렵 위토의 매매가 문중의 일로 인식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옥부·이훈상, 앞의 책, 190쪽.

52) 이옥부·이훈상, 앞의 책, 229~234쪽, 235쪽.

되지 않던 적서의 문제가 공론화 된 것도 이 무렵부터였다.<sup>53)</sup>

이렇듯 부계 혈연에 기반하여 종법 질서를 강조하는 일련의 움직임이 여러 방면에서 동시에 전개되면서 이에 수반하여 여성들이 감내해야 하는 불리한 입장은 김덕경 가계의 여성들에게 위기로 느껴졌을 것이다. 여기에 이른 시기에 유교적 질서를 체득한 가문이 주위에 있다거나 차등 상속 관행의 확산으로 딸이라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었다면 이러한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었을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위기에 직면한 여성들의 다양한 전략적 대응 방법 중 하나가 김덕경 가계에서 행해진 세대 간 여성들의 상속이라고 생각한다.<sup>54)</sup> 그리고 그 목적은 재산을 주고받은 여성들 사이에 형성되는 경제적 유대일 것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현재 확인되는 문서에 따르면 제주도에서 초알일 별급의 관행은 17세기부터 나타난다. 더 많은 문서를 발견할 수 있다면 아마 그 시기는 더 소급될 것이다. 초알일 별급과 관련하여 머느리를 상속 인으로 하는 점 외에 구체적인 실체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것이 여성의 노동력에 대한 높은 사회적 기대나 수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sup>55)</sup>

전근대 시기 제주도 지역은 낮은 생산력으로 인해 토지와 같은 경제적 자원의 효용성이 높지 않은 지역이었다.<sup>56)</sup> 밭작물 농업 위주의 자연적 조건은 여성의 섬세한 노동력을 포함하여 최대한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였다. 그리하여 제주도는 여성들도 남성만큼 일을 했으며, 가정과 육아까지 여성들의 책임이었던 사실을 고려하면 남성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성들이 여성을 통제하기란 쉽지 않았으며 바람직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초알일 별급이 지속된 데는 이렇듯 남성과 비교적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던 여성들의 경제적 위상이 결정적이었을 것이다.

김덕경 가계에서 초알일 별급을 통해 3대 60년에 걸친 여성들의 세대 간 상속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도

53) 각주 43번 참조.

54) 여성들의 세대 간 상속이 부계 혈연 집단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부계혈연을 강화해 나가는 또 다른 모습의 하나로 볼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차후 다른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논증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그렇게 보기 어려운 이유를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언급하려고 한다. 하나는 초알일 별급의 규모와 관련한 것으로, 다른 가문의 초알일 별급 사례에서 확인되지만 머느리는 다양한 친족 구성원들로부터 별급을 받는다. 여기에는 부계 혈연 집단 내 동성 및 이성친족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가문에 따라서는 그 규모가 매우 방대하다. 그런 까닭에 아직 가설단계이지만 필자는 이 재산들 중 일부만 부계혈연 집단의 머느리 등에게 상속되었다고 생각한다. 만약 여성이 재혼이나 이혼 등으로 시댁 을 떠날 경우 나머지 재산은 새로운 가족 구성원에게 상속되었을 것이다. 각 가문에서 초알일 별급문기의 전승 비중이 높은 것도 이와 관련하면 설명이 가능한데, 부계집단은 초알일 별급으로 상속받은 재산의 소유권을 증명할 목적으로 각별히 이 문서의 보전에 주의를 기울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제주도에서 재혼이나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육지와 달랐다면 이것은 여성이 시댁 구성원에게 행사한 재산권을 통해 일정하게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여성의 재산상속권이 약화되는 추세에 부응해 초알일 별급의 관행 자체를 없애거나 약화시키는 것이 그들의 상속권을 인정하는 것보다 부계혈연집단의 강화에 더 부합한다고 생각된다. 즉 초알일 별급의 관행 자체가 부계 혈연 집단의 강화 모습으로 보기에는 불필요한 모습이라는 점이다.

55) 이창기는 여성노동력에 대한 높은 수요로 인해 여성들이 남성과의 관계에서 일정정도 대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 이창기, 「제주도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환경-도전·적응·초월의 메카니즘」, 『제주도연구』 9, 1992, 28~29쪽. 한편, 제주도의 농업 환경에서 제초작업과 조 농사에서 2/3이상은 여성의 노동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다. 서경림·한삼인·고호성·고광민, 「제주도 마을 공동체와 법규범」, 『탐라문화』 10, 1990, 323~324쪽.

56) 현행복 편역, 『우도가』, 각, 2010, 241쪽, 245~246쪽; 이형상, 이상규·오창명 역, 『남환박물: 남쪽 벼슬아치가 쓴 18세기 제주 박물지』, 푸른역사, 2009, 46~47쪽.

여성의 재산권 행사를 통제하기 어려운 남성 집단의 타협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김씨와 고씨는 이러한 상황을 놓치지 않고 초알일 별급을 이용해 자신의 재산을 며느리에게 상속하는 전략적 상속을 선택했다. 의도는 여성들 사이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여, 개인이 아닌 집단의 힘으로 부계 혈연 중심의 종족 질서에 대응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이 전략은 일정 정도 성공했다고 판단되는데, 부계적 친족 질서가 한창 강화되던 와중에 여성들의 세대 간 상속이 3대 60년 동안 지속된 것이 바로 그 방증이다.

한편, 김덕경 가계의 여성들의 세대 간 상속에서 발견되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요소는 재산 상속에 혈연 관계가 아닌 혼인관계를 적극 활용한 것이다. 이미 실증적으로 규명했지만 김씨와 고씨는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며느리들에게 초알일 별급으로 상속했다. 재산을 상속한 김씨와 고씨, 그리고 재산을 상속받은 오씨와 부씨 사이에 직접적인 혈연관계는 없다. 그렇지만 제주도에서 혼인은 친인척으로 불리는 웬당의 범위를 확대하고, 동원 가능한 정치·경제적 자원의 확대를 가져오는 대표적 기제였다.<sup>57)</sup>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의 세대 간 상속은 경제적 유대와 더불어 가능 가능한 혼인 연망의 확대를 가져오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부계 중심의 친족질서는 부계 혈연의 응집력을 높일 수 있지만 폐쇄적 성격으로 인해 새로운 연망의 확대를 가져오는 데는 한계가 있는 점을 비교하면 혼인 연망의 확대를 가져오는 효과의 중요성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상속에 혼인 관계를 이용한 여성들의 전략적 선택의 기반에는 혈연집단의 응집력을 강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수익보다 다양한 혼인 연망을 이용한 폭넓은 웬당 관계의 확대가 더 높은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 기대가 있었다고 생각된다.<sup>58)</sup> 그 과정에서 여성들 또한 웬당 관계를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자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나아가 혼인도 가능 가능한 웬당을 가진 대등한 두 가족의 결합으로 재인식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상속과 혼인, 그리고 친족문화, 이 삼자의 관계를 규명하기에 앞서 모계나 치계와 같이 혼인으로 연결된 친족구성원들의 높은 참여와 영향력이 제주도 친족문화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사실을 한 번 더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에서 혼인은 다양한 연망을 형성하고, 동원 가능한 인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다. 혼인을 통해 여러 자발적인 연합기구가 생기고, 이것이 협력활동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은 이미 18세기의 중국사회를 연구한 학자들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sup>59)</sup> 그런 측면에서 김덕경 가계의 3대 60년에 걸친 여성들 사이의 세대 간 상속도 여성들에 의해 혼인 연망을 확대하기 위한 하나의 기제로 전략적으로 선택되었다고 생각한다.

제주도의 친족문화가 종법 질서를 강조하는 한국의 다른 지역의 친족문화와 비교해 부계혈연 중심의 응집

57) 김혜숙은 혼인의 기능을 넓은 의미에서 공동사회 집단의 유지 존속에 중요한 적응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고 지적하며, 혼인이 한 사회를 확대 재생산한다고 보았다. 김혜숙, 앞의 책, 109쪽, 121~122쪽.

58) 혼인과 사회적 연망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사돈 아니면 몇때 웬당’이라는 제주도 표현은 사돈과 웬당이 사회적 관계의 핵심을 이루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김창민, 앞의 논문(2011), 132~133쪽, 각주 9 참조.

59) 18세기의 중국사회를 연구한 나퀸은 농사일에 있어서 소규모의 자발적인 상호부조 팀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농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이웃 사람, 즉 지역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제주도에서 지역집단 또한 웬당으로 불리며 친인척의 범주에 속하는 것도 경제활동에 있어 이웃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Naquin, Susan, Rawski, Evelyn S/ 정철웅 옮김, 『18세기 중국사회』, 신서원, 1998, 71~74쪽.

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면 이것은 분명 제한된 경제 자원을 효과적으로 획득하는 과정에서 혼인 연망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결과 야기된 상황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경제적 기반이 약한 집단일수록 혼인 연망을 통한 폭넓은 웬당 관계를 확보하려는 욕망은 컸다. 이런 측면에서 초알일 별급의 관행은 여성들의 경제적 유대를 통해 혼인 연망을 견고하게 하는 한편, 새로운 웬당 관계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된다.

## 2. 무속신앙에 나타난 문화적 유대

김씨나 고씨처럼 김덕경 가계의 여성들은 초알일 별급의 상속 관행을 이용해 며느리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전략적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여성들 사이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였다. 이것은 19세기로 접어들며 가계 내에서 부계계승의 원리가 강화되던 움직임에 대응해 자신들의 위상을 유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초알일 별급으로 재산을 소유한 제주도의 모든 여성이 김씨나 고씨처럼 아랫세대의 며느리를 상속인으로 삼는 선택을 한 것은 아니다. 다른 가문에서는 여성들의 세대 간 상속의 사례가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거나 가문마다 초알일 별급문기가 산발적으로만 전승되는 것도 여성들의 세대 간 상속이 전략적 선택의 일환으로 행해졌음을 잘 보여준다.

그렇다면 세대 간 상속을 통해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려는 김덕경 가계 여성들의 전략적 선택은 어떤 배경에서 나왔을까. 그리고 이러한 선택이 지속될 수 있었던 기반은 무엇이었을까. 필자는 이와 관련하여 무속신앙을 매개로 하는 제주도 여성들의 문화적 유대에 주목하였다. 사실 무속신앙과 기록문화의 상관성을 확인하는 일은 쉽지 않으며,<sup>60)</sup> 문서에서 무속과 관련한 내용을 직접 확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제주도 무속의례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여성들의 문화적 유대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여성들의 유대가 다양한 층위에서 누적되며 상호 보완되었을 개연성을 검토하였다. 그런 이유로 아직 다른 가계의 사례가 확인되지 않아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향후 동부 지역에서 김덕경 가계의 여성들과 비슷한 전략을 구사하는 사례는 더 발견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sup>61)</sup>

제주도에서 동부지역은 서부지역에 비해 경제적 환경이 더 열악하여 문중의식은 약하지만 대신 마을공동체의 협력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sup>62)</sup> 게다가 열악한 환경에 대한 대응으로 초월적 존재에 의존하려는 무속신앙이 제주도 내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성행하던 곳이기도 하다.<sup>63)</sup> 당집과 같은 구조물이 동부 지역에 집중되거나 현재까지 당굿을 지속하고 있는 마을이 조천과 구좌읍만 해도 10개가 넘

60) 거제와 통영지역 어촌 마을 주민들의 기록문화 창출에 주목하여 이것이 별신굿의 연행과 연동되어 있음을 밝힌 연구는 무속의례와 기록문화의 상관성을 밝힌 연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훈상, 「19세기 중엽 이후 거제 통영 지역의 별신굿 연행과 기록 문화 전통의 창출」, 『진단학보』127, 2016.

61) 향후 구술조사와 새로운 자료 발굴을 통해 무속신앙을 통한 여성들의 문화적 유대와 경제적 유대의 상관성을 더 보완할 계획이다.

62) 농우의 95%이상이 암소여서 수소가 많은 서부지역과 달리 방목지를 마을공동 소유로 하며, 이에 따라 마을협동 노동이 중요하게 여겨졌다. 고향민, 『제주생활사』, 한그루, 2016, 34~37쪽,

63) 이창기, 앞의 논문, 25~26쪽.

는 사실도 동부지역에서 무속신앙이 성행한 사실을 잘 보여준다.<sup>64)</sup>

당 신앙과 관련하여 여신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제주도의 일반적인 특징이다. 그런데 김덕경의 가계가 세거하던 방축동 일대는 여신이 많기도 하지만 여신(구일할망)이 남신(구일하르방)보다 높은 위계를 가지고, 당제를 지낼 때도 여신에게만 격식을 갖추어 제물을 차리는 등 이 지역 여성들의 높은 위상을 일정정도 대변하는 측면이 있다.<sup>65)</sup>

이렇듯 한 지역에서 무속신앙이 성행하면 공통의 신을 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임의적인 결사나 조직이 형성된다. 이렇게 형성된 집단은 일종의 연령집단과 같은 성격을 띠며 구성원들의 친밀감과 유대감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sup>66)</sup> 그리고 이러한 집단들 중 일부가 중심이 되어 신을 섬기는 제의를 지속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제의는 조직과 조직에 긴밀하게 호응하는 구성원들, 그리고 경제적 기반이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제의가 지속되는 것은 제의에 참여하는 사람들 사이에 견고한 유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런데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지만 무속신앙을 믿는 사람의 절대 다수는 여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처럼 무속신앙이 성행한 지역이라면 제의를 둘러싸고 여성들의 견고한 문화적 유대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실제로 제주도에서 여성들 사이에 긴밀한 문화적 유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로 ‘가짓당’이나 ‘衆散’의 관행이 광범하게 확산된 사실은 대단히 흥미롭다. 가짓당은 ‘가지 갈라온 당’이란 의미로 통상 여성의 혼인으로 설립된다. 과거 통혼권이 넓지 않던 시기 여성들은 인근 마을로 시집가면서 본가 마을의 당신을 갈라 시댁 마을로 가져갔다. 상징적인 의미였지만 신목을 모시는 경우가 많아 실제 나무 가지를 갈라 가는 것이 관행이기도 했다. 이렇게 여러 여성들이 본적지에서 갈라온 당신은 시집온 마을의 한 곳에 함께 모셔졌는데, 이를 중산이라 한다.

김덕경의 가계가 세거하던 방축동(현재 한동리로 편제)에도 중산이 있었다. 지역의 당신인 구일할망을 모신 본향당의 안쪽에 별도로 마련된 제단이 그것으로, 시집오는 여성은 고향에서 모셔온 가짓당을 다른 여성들의 당신과 함께 이 제단에 모셨다.<sup>67)</sup> 그리하여 이후에는 고부가 함께 중산을 찾았고 시어머니가 죽은 후에는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당신을 함께 모시는 경우도 많았다. 두 사람의 당신이 서로 다른 경우 마음으로부터 섬기는 것은 어려웠을지 모르지만 제주도는 한 마을에도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여러 당신이 공존하는 일이 흔하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당신을 돌보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듯 가짓당과 중산의 관행이 전승된 데는 여성들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모시는 당신은 달라도 현실에서 재양을 막고 복을 빌며, 자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여성의 마음은 동일하기 때문에 제의가 지속될수록 여성들 사이의 문화적 유대 또한 강화되었을 것이다. 김덕경 가계의 여성들이 초알일 별급을 매개로 3대 60년에 걸쳐 여성들의 세대 간 상속을 지속할 수 있었던 데는 이처럼 무속신앙을 통해 이미 형성되어 있는

64) 조성윤 외, 『제주지역 민간신앙의 구조와 변용』, 백산서당, 2003, 169쪽, 184~185쪽.

65) 조성윤 외, 앞의 책, 113쪽, 118쪽, 242쪽.

66) 문옥표, 「일본사회의 조직과 개인: 임의결사를 중심으로」, 한경구·이토 아비토 공편, 『한일 사회조직의 비교』, 아연, 2003, 15~16쪽.

67) 조성윤 외, 앞의 책, 153~159쪽, 185~186쪽; 하순애, 『제주도 신당 이야기』,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8, 263~264쪽.

문화적 유대 또한 적극적으로 이용되었다고 생각한다.

재산상속과 무속에서 나타나는 상속을 통한 경제적 유대와 문화적 유대는 여성들의 결합을 공고히 하고, 나이가 부계적 가계 계승의 원칙이 강화됨에 따라 약화될 수 있는 여성 집단의 위상을 유지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이 되었을 것이다. 필자가 상대적으로 무속신앙이 더 성행한 동부 지역에서 김덕경 가계의 여성들과 같이 상속을 통해 경제적 유대 강화의 노력이 더 확인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지만 필자는 이러한 여성들 사이의 유대로 인해 제주도 지역에 고부간의 갈등이 해소되었거나 없어졌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전승 민요나 속담 등 고부간의 갈등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매우 많다. 물론 애초에 고분간의 갈등이 시작된 이유가 함께 살면서, 제사와 재산 상속에 대한 주도권을 누가 가질 것인가에<sup>68)</sup>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분가가 많고 균분상속과 제사의 분할 봉사가 많은 제주도에서 고부관계를 다른 지역의 그것과 동일하게 보아도 좋은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그럼에도 필자가 주목한 것은 상속을 통한 여성들의 경제적 유대와 무속신앙을 매개로 한 문화적 유대를 통해 고부관계도 다양한 층위에서 형성될 수 있었고, 이 또한 여성들의 이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 IV. 맷음말: 재산상속의 두 원리와 상속문화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김덕경 가계에 시집온 여성들은 초알일 별급을 매개로 재산을 상속받고, 이 재산을 다시 며느리에게 상속하는 방식을 통해 3대 60년에 걸쳐 여성들 사이의 세대 간 상속을 이어나갔다. 이러한 상속 관행은 19세기를 전후하여 처음 나타나는데, 이 시기는 김덕경의 가계에서 부계 혈연을 중심으로 종족 질서를 강화해가던 시기였다. 이는 두 사안이 연동되어 있음을 시사하는데, 그 상관성을 재산 상속의 두 가지 원리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으로 맷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김덕경의 가계에서 확인되는 여성들의 세대 간 상속의 사례는 제주도에서 재산상속이 두 가지 원리에 따라 작동되고 있었던 사실을 보여준다. 하나는 혈연의 원리에 따른 상속으로, 대부분의 상속이 여기에 속한다. 재산 상속의 경향은 육지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균분 상속에서 차등 상속으로 바뀌며, 대체로 19세기를 전후하여 아들을 우대하는 경향이 확연해진다. 다만 장자우대 불균등 상속은 육지만큼 두드러지지 않는데, 부계적 원리와 비부계적 원리가 공존하는 제주도 친족문화의 성격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재산상속에 작동하는 다른 하나의 원리는 혼인의 원리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초알일 별급을 들 수 있는데, 초알일 별급은 혼인한 여성에게 남편의 친족 구성원들이 재산을 별급하는 것이다. 친족의 규모나 유대에 따라 여성이 초알일 별급으로 증여받는 재산의 규모는 달라지는데, 김덕경의 가계의 경우는 시할머니나 시아버지, 시어머니 등 가족만 초알일 별급으로 재산을 상속하고 있다.

68) 김윤정, 「조선헌기 고부관계의 변화양상-종법의 수용과정을 중심으로」, 『민속학연구』 20, 2007, 37~38쪽.

초알일 별급으로 상속받은 재산의 귀속은 가문이나 여성 개인의 위상에 따라 달랐다고 생각되는데, 김덕경 가계의 경우는 며느리의 재산으로 간주되었다. 그리하여 며느리는 이 재산을 처분할 권리를 가졌는데,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재산의 대부분을 혈연으로 이어진 자녀가 아니라 혼인을 통해 가족으로 둑인 며느리에게 상속하고 있다. 경제적 유대를 강화할 목적으로 행해진 별급이지만 여기에도 혼인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김덕경 가계의 여성들은 자신 소유의 재산을 상속하는데 있어 의도적으로 혈연의 원리가 아닌 혼인의 원리를 선택한 것이다.

이렇듯 제주도에서 19세기까지 초알일 별급의 관행이 지속된 데는 혼인의 원리가 재산상속의 원리로서 계속 안정적으로 수용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김덕경 가계의 3대 60년에 걸친 여성들의 세대 간 상속도 이 기반 위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제주도 친족문화에서 웬당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수 있는 것도 이러한 혼인의 원리가 수용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혼인은 웬당을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졌으며, 웬당은 열악한 제주도의 농업 환경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였다. 김덕경 가계에서 확인되는 여성들의 세대 간 상속은 부계적 질서를 강화하며 혈연의 원리를 강조하려는 세력과 혼인의 원리를 내세워 비부계적 집단의 입지를 유지하려는 세력이 긴장관계를 형성하면서 여성의 노력이 부각되며 나타난 상속문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 |                       |                         |                         |
|-----------------------|-------------------------|-------------------------|
| ○ 투고일 : 2018년 12월 28일 | ○ 심사완료일 : 2019년 01월 29일 | ○ 게재확정일 : 2019년 02월 11일 |
|-----------------------|-------------------------|-------------------------|

## 참고문헌

『승정원일기』

『신증동국여지승람』

『영조실록』

강명관, 『신태영의 이혼 소송 1704~1713』, 휴머니스트, 2016.

고광민, 『제주생활사』, 한그루, 2016.

고창석, 「조선후기 제주지방 별급문기의 연구」, 『제주도사연구』 7, 1998.

고창석, 『제주도고문서연구』,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2001.

고창석 · 김상옥 역주, 『제주계록』, 제주발전연구원, 2012.

김상옥, 「조선후기 제주지방 군사제도」, 『19세기 제주사회 연구』, 일지사, 1997.

김옥희, 「제주도 천주교의 수용전개 과정」 『탐라문화』 6, 1987.

김원태, 「일제강점초기 처의 特有財產에 관한 관습법-조선고등법원판결의 분석을 중심으로」, 『법사학연구』 31, 2005.

김윤정, 「조선전기 고부관계의 변화양상-종법의 수용과정을 중심으로」, 『민속학연구』 20, 2007.

김일우, 「고려 · 조선시대 외부세력의 제주진입과 제주여성」 『한국사학보』 32, 2008.

김지홍, 「溫平里 고문서 연구」 『탐라문화』 6, 1987.

김창민, 「제주도 마을의 호적중초에 나타난 웬당관계의 변화」 『한국문화인류학』 44-3, 2011.

김창민, 「호적중초를 통해서 본 19~20세기 제주도 마을의 웬당관계」 『비교문화연구』 16-1, 2010.

박용후, 『제주방언연구』 자료편, 고대민족문화연구소 출판부, 1988.

서경립 · 한삼인 · 고호성 · 고광민, 「제주도 마을 공동체와 법규법」, 『탐라문화』 10, 1990.

이옥부, 「조선후기 제주도 지역의 별급관행과 그 특성-구좌읍 김해 김씨 가문의 별급문기를 중심으로-」, 『역사학 보』 238, 2018.

이옥부, 「조선후기 제주도 한동리 김해 김씨 김덕경 가계와 이들의 경제기반-김덕경 가계의 ‘상속 및 거래’ 문서를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18-1, 2015.

이옥부 · 이훈상, 『조선후기 제주목 한동리의 김해 김씨 가문과 이들의 고문서』,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5.

이창기, 「제주도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환경-도전 · 적응 · 초월의 메카니즘」, 『제주도연구』 9, 1992.

이창기, 『제주도의 인구와 가족』, 영남대 출판부, 1999.

이형상/ 이상규 · 오창명 역, 『남한박물: 남쪽 벼슬아치가 쓴 18세기 제주 박물지』, 푸른역사, 2009.

이훈상, 「19세기 중엽 이후 거제 통영 지역의 별신굿 연행과 기록 문화 전통의 창출」, 『진단학보』 127, 2016.

정지영, 『질서의 구축과 균열: 조선후기 호적과 여성들』,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5.

정해은, 「조선후기 이혼 위기에 처한 여성들」 『여/성이론』 26, 2012.

제주도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제주여성사 자료총서 VII 제주여성 근 · 현대사 구술자료② 제주여성의 생애 살암 시난 살았주』, 도서출판 각, 2006.

- 제주특별자치도, 『개정증보 제주어사전』, 2009.
- 조성윤 외, 『제주지역 민간신앙의 구조와 변용』, 백산서당, 2003.
- 최재석, 『제주도의 친족조직』, 일지사, 1984.
- 하순애, 「18세기 초 제주인의 신앙생활과 신당파괴사건」, 『탐라순력도연구논총』, 탐라순력도연구회, 2000.
- 하순애, 『제주도 신당 이야기』,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8.
- 한경구 · 이토 아비토 공편, 『한일 사회조직의 비교』, 아연, 2003.
-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서집성110-제주 어도 진주강씨 · 조천 김해김씨 · 구좌 동래정씨 고문서』, 2014.
- 현행복 편역, 『우도가』, 각, 2010.
- Dallet, Charles/ 양웅렬 · 최석우 역주, 『한국천주교회사(상)』, 한국교회사연구소, 1987.
- Martina Deuchler/ 이훈상 역, 『한국의 유교화 과정』, 너머북스, 2013.
- Naquin, Susan, Rawski, Evelyn S/ 정칠웅 역, 『18세기 중국사회』, 신서원, 1998.
- 吉川絢子, 「植民地朝鮮における離婚訴訟と朝鮮民事令」『史林』49-5, 2011.
- 佐藤信行, 「濟州道の家族-村の事例から」, 『韓國農村の家族と祭儀』, 東京大学出版会, 1973.

## Abstract

# Property Ownership and Inheritance Rights of Women in Jeju During Late Joseon - Focus on Byulgeub Mungi of Gujwa-eub Kim hae Kim Family -

Lee Okboo\*

This research aims to reveal the details of a married woman(daughter-in-law)'s property ownership and inheritance rights, focusing on the inheritance documents of Jeju island in the late Joseon Dynasty, furthermore,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ercise of women's right to inheritance and Jeju Island's kinship culture, where rights of women's descent group are highly influential. For this, this research analyzed huge amount of ancient documents of Gujwa Kimhae Kim Family Kim Deokgyeong family. Until now, it has been understood that women will also have a high economic status because of the high social dependence on women's labor due to the farming environment, which mainly consists of fields and grain cultivation. However, few concrete cases have been revealed regarding women's economic behavior or status, and none of the studies have taken into account the relationship between women's economic status and Jeju's kinship culture. Thus, I first analyzed the five or so separate Byulgeub Mungi(別給文記) that showed women's economic behavior, and then used the documents of other families written at the same time to clarify the status of women's property ownership and its size, and closely tracked the process of women's right to inheritance.

The focus is placed on the characteristics and meaning of the intergenerational inheritance of women over three to sixty years who inherit property from their husband's family members after a woman marries, and then inherit it back to the lower generation of married women. 'Choalil Byulgeub', with the married women as the receivers, is one of Jeju's inheritance custom that spread widely until the 19th century. The daughters-in-law of Kim Deog-gyeong's household owned

\* Dong-A Univ. Seokdang Academy, A Special Researcher

property as Choalil Byulgeub and exercised the property rights by inheriting it to their daughter-in-law, who had no direct blood relationship. In the process, women actively utilize marriage ties and show that generations are trying to strengthen economic ties between different women, which is believed to have been well supported by cultural aspects in Jeju Island, where the tradition of shamanism is strong.

The efforts to strengthen women's ties through inheritance are deeply related to the strategic response of women to prevent the weakening of the female group's status as the principle of paternal succession has been strengthened. Emphasizing its advantages, the study sought to find the characteristics of Jeju's kinship culture in women's roles and responses, which do not insist on the cohesion of the paternal blood group. It is hoped that the study, which identified the strategic choices of women in property loss and paid attention to women's bond accordingly, will provide new imagination in discovering the correlation between marriage and inheritance and kinship culture.

Key words : jeju, woman, inheritance, marriage, kinship, byulgeub(別給), property distribution documents(分財記)